

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0. . .
발 의 자	김재우 의원 외 10명

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재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 안	
변 호	

발의연월일 : 2020. . .

발 의 자 : 김재우 · 권재욱 · 김춘남 · 박교상
송용자 · 안장환 · 안주찬 · 이선우
이지연 · 장미경 · 홍난이 의원(11인)

1. 제안이유

인문학 진흥 위원회의 전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
인문학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위탁 · 운영 규정을
신설 ·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6조)

- 구미시 인문학 진흥심의위원회 → 구미시 인문학 진흥자문위원회

나. 인문학 사업의 위탁 · 운영(안 제16조 신설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
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하기”를 “자문하기”로, “진흥심의위원회”를 “진흥자문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,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인문학 사업의 위탁·운영) 시장은 인문학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규정한 인문학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하기</u> 위하여 구미시 인문학 <u>진흥심의위원회</u>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----- ----- ----- <u>자문하기</u> ----- <u>진흥자문위원회</u>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6조(인문학 사업의 위탁·운영)</u> 시장은 인문학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규정한 인문학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<u>제16조 ~ 제18조</u> (생략)	<u>제17조 ~ 제19조</u> (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교육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생략

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위 조례안 제16조에서 인문학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안 제16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인문학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세부사업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어 재정의 추계의 어려움이 있음.

4. 작성자

-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계장 허정희(480-2711)
-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계 박은주(480-2712)